

(온라인) 2026. 7. 9.(목) 12:00
보도시점 (지 면) 2026. 7. 10.(금) 조 간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어제와 오늘 역대 대통령의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 제15회 인구의 날(7.11.) 맞아 인구 정책 관련 역대 기록물 41건 제공
- 경제개발계획 연계 인구 억제책부터 범정부 저출생 대응까지 행정의 발자취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7.11.)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을 오는 7월 11일(토)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총 41건으로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은 1960~1980년대의 ‘인구 증가 억제(산아제한) 정책’부터 1990년대 후반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반전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체계(패러다임)가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 정부 초기 제도적 기틀 마련과 인구 억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시대별 주요 공개 기록물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계획을 심의하고자 「제1회 총인구 조사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하여 국가 행정의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강력했던 인구 정책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 등의 문서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생·고령사회 범정부 대응의 역사

한편,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은 정부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시도했던 초기 대응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깊이 고뇌했던 흔적이 담긴 ‘친필 메모’가 최초로 공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저출산·고령사회발전전략)」,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일자리·주거 중심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역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보완 과정이 모두 포함되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조상민 (044-211-2210)
		담당자	연구관	안대희 (044-211-2251)
			연구사	김선희 (044-211-2254)



주요 대통령기록물

國務會議之議決을거치기制定한第一面總令調查
施行令을이公布한다

大統領令第三九號

第一面總令調查施行令

國務委員 國務總理兼國防部長官 李承晚
國務委員 國務部長官 尹致暎

檀紀四百十一年十一月十三日

大統領 李承晚

韓國總統府印

15660

비서주관	처장	차장	제1과장	제2과장	제3과장	총무부장	기타
인	시	인	시	인	시	인	시
본 제 공 제 <u>85</u> 호 기안일 <u>1964년 1월 13</u> 일 원환공부 <u> </u> 보문공부 <u> </u>							
인 명 <u>家族計劃會議委員會規程公布件</u>							
<u>1964년 1월 13</u> 일 제 <u>85</u> 회 각의에서 의결된 피터의견을 각명으로써 공포하교자 라오너제가하여 주집을 바라나이다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
(이승만 대통령)

정부 수립 이후 정확한 총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된 법령이다. 일제강점기 '국세조사' 체제에서 탈피해 '총인구조사'로 전환하였으며, 1949년 실제 조사와 집계를 시행하여 오늘날 '인구조택총조사'의 모태가 되었다.

가족계획심의위원회규정 공포의 건
(윤보선 대통령)

보건사회부 내에 가족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공포된 규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 주도로 전개될 산아제한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미정 (이)

報 告 書

대통령

報告書號 第 1154 號

1966 . 11. 24.

大 統 領 閣 下

報告官

바

속

장

인

題 目 : 가족 재회 사업의 실적

1971 년말에 인구 자연 증감율은 2.0% 보 강육서적조저 추원중인
 사업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함.

1. 실 령

가. 제 1 과 5 개년 계획과 실적.

	목 표		실 실적	
	상 년	누 계	상 년	누 계
1962				
1963			1,493	1,493
1964	100,000	100,000	106,397	107,690
1965	200,000	300,000	225,946	233,836
1966	350,000	650,000	322,897 (10월말 현재)	656,693 (10월말 현재)

(참고) : 세계 무역국을 인구 증감율 (64 년보 유원 인구 년보)

미국 (64)	1.38 %	한국 (64)	2.7 %
일본 (64)	1.08 %	태국 (66)	2.2 %
서독 (64)	0.72 %	프랑스	1.29 %

59

2184

大 統 領 報 告 室

(94-)

2183

47254

婚姻年輪의 上昇은 社會·經濟的 條件의 變化에 힘입어 生産力이 飛躍한 것과 1975—80년에 年平均 1.6%의 鈍化되어 왔다. 그러나 傳統的인 兒子多子觀과 男兒選好 觀念이 아직도 남아있고 婚姻年輪의 上昇勢도 停止되어 出産抑制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人口增加率을 계속적으로 낮추어가려면 人口增加抑制施策을 各種 效率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人口構造는 近來 出生力이 낮아짐에 따라 피라밋型에서 鐘型에 가깝게 變化되고 있다. 따라서 14歲 이상 人口는 1980年에 總人口의 68.2%인 25,994千名에서 1986年에는 總人口의 71.8%인 30,050千名으로 增加될 것임으로 높아나는 經濟活動人口에 대한 雇傭對策이 要請되므로 65歲 이상 老人人口가 크게 增加될 것임으로 老人福祉施策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60年을 前後한 多産期의 影響으로 可妊女性人口가 1980年에 女性人口의 52.7%인 9,959千名에서 1986년에는 女性人口의 54.5%인 11,296千名으로 增加되고 있음으로 人口增加의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1. 基本政策方向

人口增加率을 1980년의 1.57%에서 1986년에는 1.49%로 낮추고 1988
년까지는 代置出產水準에 이르도록 家族計劃事業을 보다 活性化하며
少子女價值觀을 形成하기 위한 各種 支援施策을 強化하고 海外移住를
擴大해 나갈 것이다.

2. 計劃의 內容과 政策手段

避妊實踐率을 1980年의 55%에서 1986年에 67%로 높이도록 人口問題에 대한 社會的인 認識을 높이고 雰圍氣를 造成하는 한편 家族計劃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계획 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다. '1971년 말 기준 인구 자연증가율 2.0% 이하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범정부 차원의 가족계획(산아제한) 사업 실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
(전두환 대통령)

가족계획을 통한 인구억제를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던 시기의 계획서이다. 당시 인구정책이 독립된 영역이 아닌, 국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포함되어 강력히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

1299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등폐지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i>노태우</i> 1990년 5월 3일 국무총리 <i>김영삼</i> 국무위원총추천장관 <i>이연택</i> 국무위원 장관 국무위원 장관 국무위원 장관 국무위원 장관 0401-1-6A 1971. 11. 21 승인 12999 15076	政府投資機關長會議 資料 公共部門 高齡者 活用 擴大方案 95. 5. 26 財政經濟院 22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등폐지령(제12999호) (노태우 대통령) 경제기획원 산하에서 인구정책을 종합 심의·조정하던 기구를 1990년에 폐지한 내용의 문서이다. 출산율 급감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수십 년간 이어진 산아제한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인구정책 기조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방안 (김영삼 대통령)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의 증가율이 둔화하고 인력 부족 현상이 대두되던 시기의 대책안이다. 고령자 활용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채용을 선도하고 이를 민간까지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849 국회에서의 결된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 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i>김대중</i> 200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i>김영삼</i> 국무위원노동부장관 <i>박종철</i> 국무위원 장관 736	1. 육아 -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정책의 최 우선 과제.) • 생애주기, 돌봄정책에 관한 사회. 2. 재향, 도농, 여성 • 육아 -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 육아 -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3. 육아 -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 육아 -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 육아 -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 5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제6849호) (김대중 대통령)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에 맞춰 산업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을 공포하는 문서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고용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제46회 국정과제 회의(2004.6.11.) 친필메모 (노무현 대통령) 2004년 국정과제 회의 당시 작성된 메모이다. 출산력 제고, 미래인력 양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인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 (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부 저출산·고령화 : 위기와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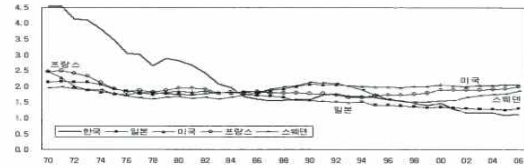
1. 저출산·고령화 추이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 위협

□ 합계출산율이 '83년 인구대체수준(2.1명)에 도달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0년대 초에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

- '05년 1.08명으로 저점을 이룬 후 '06년에 1.13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현상 지속
 - 미국(2.10), 프랑스(2.01), 스웨덴(1.85) 등은 물론 OECD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1.6명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 세계적으로 출산수준이 낮은 이태리('05년 1.32), 스페인('05년 1.33), 일본('06년, 1.32)보다도 낮은 수준

【주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명) 추이】



○ 출생아수는 70년대 초까지 연간 100만명 이상이 태어났으나, 1980년 86만명, 2006년 45만명으로 급격 감소

- 합계출산율이 최근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가임여성(15~49세) 감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신생아수는 감소 예상
 - 가임여성 인구추이(천명) : 06| 13,290 → 10| 12,912 → 20| 11,313 → 50| 6,365
 - 신생아수 변동추이(천명) : 06| 452 → 10| 437 → 20| 380 → 50| 2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노무현 대통령)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고령사회기본법안,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 등 법률안을 논의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추진 되었다.

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 (저출산·고령사회 발전전략, '08~'12) (이명박 대통령)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출산율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드림플랜이 수립되었으며, 4대분야, 52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12. .

관계부처합동

신혼부부 고령층 주거지원대책 발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6~'20) (박근혜 대통령)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거분야 핵심 대책이다.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인 결혼 기피를 완화하기위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층 안정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제공, 전세임대의 신규공급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 송부 (문재인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 범위가 출산장려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회 혁신 등을 핵심 목표로 삼아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이다.